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51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 운동부 육성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거창군 엘리트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거창군체육회로 하여금 재위탁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관내

다. 수탁기관 : 거창군체육회

라.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안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190,000	205,000	317,500	317,500

마. 사업내용

○ 대회참가비, 훈련비, 용품지원비, 코치 인건비 등

○ 대상종목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공업고등학교

- 역 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바.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사. 재위탁기간 : 2020. 1. 1. ~ 2023. 12. 31.(3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협약체결 등)

나. 추진일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1월
- 군의회 동의 : 2019. 12월
- 재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2019. 12월

다. 재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사무처리 평가 및 재위탁 계획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창군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중인 엘리트 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 및 재위탁 시행계획입니다.

## I 큰 거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협약체결 등)

## II 개 요

- 사업비

(단위: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안	비고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190,000	205,000	317,500	317,500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 재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간
- 수탁자 : 거창군체육회
- 대상종목
  - 배드민턴 :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거창공업고등학교
  - 역 도 : 대성중학교, 거창대성일고등학교

### III 현 황

#### □ 선수 및 코치현황

##### ○ 배드민턴부

구 분	선 수 (명)	창남초				거창중				거창공업고			
		소계	4년 미만	5년	6년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17	40	16	14	2		5	2	2	1	9	4	0	5
2018	28	15	10	2	3	7	2	2	3	6	3	3	-
2019	28	14	8	3	3	5	2	2	1	9	3	3	3
창 단		창단 : 2001. 11 코치 : 유성철(교육청) 감독 : 오상우(교사)				창단 : 2004. 4 코치 : 정세일(교육청) 감독 : 경양수(교사)				창단 : 2011. 11 코치 : 김진규(거창군) 감독 : 정한몽(교사)			

##### ○ 역도부

구 분	선 수 (명)	대성중				대성일고			
		소계	1년	2년	3년	소계	1년	2년	3년
2017	10	8	3	4	1	2	2		
2018	8	8	3	2	3	4	1	3	
2019	9	6	4 (6학년2명)		2	3	1		2
창 단		창단 : 2013.03.02 코치 : 김하나(교육청) 감독 : 김봉수(교사)				창단 : 2017. 6월 교기지정 코치 : 이창준(거창군) 감독 : 최고봉(교사)			

□ 연도별 대회참가 결과

○ 배드민턴부

구 분	창남초		거창중		거창공업고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2017	▶ 경남초중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전 ▶ 요넥스 국제대회	1위 3위 8강	▶ 전국소년체전 ▶ 여름철 종별대회 ▶ 학교대항 선수권대회	2위 64강 1명 8강 1명	▶ 화순전국학교대항 ▶ 여름철배드민턴 ▶ 전국체전	8강 16강 8강
2018	▶ 봄철 전국대회 ▶ 여름철 전국대회 ▶ 화순 전국 학교대항전 ▶ 가을철 전국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탈락	▶ 봄철 전국대회 ▶ 여름철 전국대회 ▶ 화순 전국 학교대항전 ▶ 가을철 전국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탈락	▶ 봄철 전국대회 ▶ 여름철 전국대회 ▶ 화순 전국 학교대항전 ▶ 가을철 전국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탈락
2019	▶ 전국회장기대회 ▶ 봄철 전국대회 ▶ 여름철 전국대회 ▶ 가을철 전국대회 ▶ 전국소년체전	1회전 탈락 7패 탈락 1회전 탈락 1승4패 탈락 경남연합 3위	▶ 전국 중고 회장기대회 ▶ 봄철 전국대회 ▶ 여름철 전국대회 ▶ 화순 전국학교대항 ▶ 가을철 전국대회 ▶ 전국소년체전	8강전 탈락 3승3패 탈락 1회전 탈락 1회전 탈락 1승4패 탈락 1회전 탈락	▶ 전국 중고 회장기대회 ▶ 봄철 전국대회 ▶ 여름철 전국대회 ▶ 화순 전국학교대항 ▶ 가을철 전국대회 ▶ 전국체전	1회전 탈락 1승4패 탈락 1회전 탈락 2회전 탈락 2승2패 탈락 1회전 탈락

○ 역 도 부

구 분	대 성 중		대성일고	
	참가내역	참가 결과	참가내역	참가 결과
2017	▶ 전국춘계역도대회 ▶ 전국소년체전 ▶ 전국중등부 전국역도대회	금6개, 은3개 금2개, 동3개 금6개, 은3개	▶ 춘계역도대회 ▶ 중고역도대회 ▶ 전국체전	금3개 금2개, 은1개 4위(2회)
2018	▶ 전국남자역도대회 ▶ 전국소년체전 ▶ 전국 중등부 역도대회	은6개 은3개 금3개 은3개	▶ 중고역도대회 ▶ 전국체전	금3개 은1개 5위
2019	▶ 전국소년체전	동 1개	▶ 춘계남자역도대회 ▶ 전국남자역도대회 ▶ 중고역도대회 ▶ 전국체전	금1개, 은3개, 동2개 은3개 금1개, 은3개 동2개

□ 사업비 집행내역

○ 2017년

학교	집행내역(단위:원)							
	합계	인건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남초	29,414,950	-	-	8,302,650	9,032,000	12,080,300	-	-
거창중	24,054,730	-	-	6,339,730	5,283,000	12,432,000	-	-
거창공고	71,669,510	32,641,260	5,280,000	8,196,250	7,052,000	18,500,000	-	-
대성중	20,177,000	-	-	4,451,600	8,025,400	7,700,000	-	-
대성일고	43,249,850	27,312,350	-	1,763,000	5,972,500	8,202,000	-	-
체육회	2,662,200	-	-	-	-	-	556,200	2,106,000
계	191,228,240	59,953,610	5,280,000	29,053,230	35,364,900	58,914,300	556,200	2,106,000

○ 2018년

학교	집행내역(단위:원)							
	합계	인건비 및 피복비	기숙사비	대회지원비	훈련지원비	용품지원비	여비	업무추진비
창남초	28,678,750	-	-	7,161,130	8,025,220	13,492,400	-	-
거창중	29,246,680	-	-	7,498,300	9,609,380	12,139,000	-	-
거창공고	71,905,820	37,488,690	6,000,000	5,071,130	10,206,000	12,940,000	200,000	-
대성중	16,739,850	-	-	2,399,850	8,843,000	5,497,000	-	-
대성일고	55,722,870	37,440,630	-	4,346,000	7,162,240	6,154,000	620,000	-
체육회	3,508,000	-	-	-	-	-	779,000	2,729,000
계	205,801,970	74,929,320	6,000,000	26,476,410	43,845,840	50,222,400	1,599,000	2,729,000

□ 2019년 사업비 집행계획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17,5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급 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 복 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5,500,000
							출장여비	3,0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1,500,000
							업무추진비	3,000,000
						운영비	소계	123,5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8,000,000
							대회지원비	29,500,000
							기숙사비	6,000,000
계			317,500,000	계			317,500,000	

\* 인건비

- 급여 : 지도자 5명 × 37,500천원 / 피복비 - 지도자5명 × 200천원

- 군 채용 코치 3명(사격, 유도, 축구) 거창군체육회 인력관리전환

※ 지도자(코치) : 배드민턴 김진규, 역도 이창준, 사격 정희택, 유도 좌성희, 축구 최원민

\* 관리비 : 엘리트운동부 운영경비(체육회 여비, 업무추진비, 코치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 운영비

- 훈련용품비 : 배드민턴, 역도 용품 지원

- 훈련지원비 : 훈련 시 식비, 간식비, 숙박비 등 지원

- 대회지원비 : 대회 참가 경비(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 기숙사비 : 500천원 × 12개월

## □ 2020년 예산안

수입				지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위탁금	운영비	운영비	317,500,000	위탁금	인건비	소 계	188,500,000		
						금 여 (후생복지비 포함)	187,500,000		
피 복 비	1,000,000								
					관리비	소 계	5,500,000		
						출장여비	3,000,000		
						대회참가 실비보상비	1,500,000		
					운영비	업무추진비	3,000,000		
						소계	123,500,000		
						훈련용품비	50,000,000		
						훈련지원비	38,000,000		
						대회지원비	29,500,000		
					기숙사비	6,000,000			
				계		317,500,000	계		317,500,000

## IV 평 가

- 거창군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법령 및 조례상으  
어려움이 따름
  -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 거창군체육회에서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운영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거창군체육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의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V 추진계획

- 2019. 11.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6~9명) 및 심의
- 2019. 12. : 위탁기관 재계약 관련 의회 동의
- 2019. 12. : 선정 및 재협약 체결

붙임 : 협약서 안 1부. 끝

#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민 간 위 탁 협 약 서 ( 안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집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거창군수 “갑”과 수탁자인 거창군체육회장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민간위탁 목적)** 본 위탁금은 엘리트운동부의 육성과 우수 선수 발굴 및 학교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금 교부액)** 위탁금 교부액은 금317,000,000원(금삼억일천칠백만원) 으로 한다. 단,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위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20. 1. 1. ~ 2022. 12. 31.까지로 한다. 단, 위·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전에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갑은 재협약 및 재계약 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한다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거창군 엘리트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6조(관련법·조례 및 규정 준수 의무) “을”은 수탁 기간 중 「엘리트운동부 육성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및 결산 보고 등)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과정에서 “위탁자”가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 등 예산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위탁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업무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검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조사·검사 및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엘리트운동부 육성과 관련하여 지침 또는 훈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019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을” : 거창군체육회장

## 관련 법령

###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 8조 (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 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15.12.10.)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 범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5. 2019.4.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9.12.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09.12.30>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개정 2009.12.3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호삭제및이동2019.4.3. >